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11월 17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1) 상정
- 제1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12. 11)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 최 인 용)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 공포·시행)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 제정, 2006. 7. 1.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등의 수수료 금액을 800원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7호
의결 년월일	2006.12.21 (제132회)

제출년월일 : 2006. 1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846호, 2006. 1. 11. 공포·시행)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제정(대통령령 제19567호, 2006. 6. 29. 제정, 2006. 7. 1.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등의 수수료 금액을 800원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그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각각 8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 1)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증명 제2호의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요액란중 “600원”을 “800원”으로 하고, 제3호의 (1) 지방세납세증명서의 요액란중 “1,200원”을 “800원”으로 하며, 제4호의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의 요액란중“1,000원”을 “800원”으로,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의 요액란중 “1,000원”을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제3조관련)				[별표 1] 제증명등수수료요일표(제3조관련)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2. -----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u>600 원</u>		(5) -----	----	<u>800 원</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에 관한 증명				3.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	<u>1,200 원</u>		(1) -----	----	<u>800 원</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4. 주택에 관한 증명				4.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u>1,000 원</u>		(2) -----	----	<u>800 원</u>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1호	<u>1,000 원</u>		(3) -----	----	<u>800 원</u>	